

부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출자 : 2008년 11월 14일 부천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08년 11월 14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48회 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2008. 12. 11) 상정
- 제148회 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2008. 12. 11)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세정과장 조재형)

가. 제안이유

-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 분법되어 개별 법률로 분리 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게임·음악·영화 및 비디오물 관련 수수료의 효율을 변경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게임·음악·영화 및 비디오물 분야 23개 종목의 수수료 효율을 변경함.(안 별표 1)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의 내용	답변 내용
<p>○ 소비자정책 심의위원회의 의결은 받았는지?</p>	<p>○ 부천시소비자정책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를 받았으며, 수수료율도 평균 10-20% 하향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음.</p>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없음

나. 반대토론

○ 없음

5. 심사결과

○ 원안의결

6. 소수의견

○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부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 중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10호 본문 중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 중”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의 목적이”로 한다.

제8조의 제목 “(규칙)”을 “(시행규칙)”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조례”를 “조례의”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별표 1]

제증명등의 수수료표(제3조 관련)

(단위: 원)

구 분	기 준	금 액	비 고
1. 증명			
가.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1) 각종 신고 및 등록필	1통	1,200	
2) 공장등록증명	1통	1,000	전국통일
3) 건축물관리대장 무등재 증명	1통	700	
4) 의료기관약국(휴·폐업) 사실증명	1통	3,000	
나. 도시계획 등에 관한 증명			
1) 환지(예정지 지정)증명	1필지	4,000	
2) 환지예정지에 대한 종전토지분할	1필지	1,500	
3) 체비지 분할신청	1필지	1,500	
4) 토지대금 완납증명	1건	1,200	
5)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1필지	800	전국통일
6) 부동산중개업			
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			
· 개 인	1건	20,000	전국통일
· 법 인	1건	30,000	전국통일
나) 중개사무소 등록증 재교부	1건	9,000	
다) 분사무소의 설치신고	1건	28,000	
다. 지방세에 관한 증명			
1) 지방세 납세증명서	1통	800	전국통일
2)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	1통	800	전국통일

라. 주택에 관한 증명			
1) 공(시)영 주택분양금 납부증명	1통	1,500	
2) 개별주택가격확인서	1호	800	전국통일
3) 공동주택가격확인서	1호	800	전국통일
마.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부여	1건	600	
바. 그 밖의 제증명			
1) 기타시설·공부 등에 의해 발급하는 증명	1통	800	
2.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			
가. 일반행정 관계			
1)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대부신청	1건	5,000	전국통일
2) 공유재산의 계속 사용수익허가·대부신청	1건	3,000	전국통일
3) 기타 각종 인·허가, 신고필증 등 재교부	1건	3,500	
나. 상공 및 동력자원 관계			
1)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신청	1 건	50,000	
2)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등록신청	1 건	14,000	
3)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 신고	1 건	35,000	
다. 건설 관계			
1) 사도개설허가 및 축조 변경허가신청	1건	58,000	
2) 하천 허가사항 변경신고	1건	16,000	
3) 공영주택의 양수, 양도 등 승인신청	1건	4,000	
4) 공(시)영주택(증·개축)승인신청	1건	4,500	
5) 도시계획사업 허가신청	1건	27,000	
6) 체비지 명의변경 신청	1건	4,000	
7) 토지사용(체비지) 승낙서	1건	4,000	
8) 체비지 확인서(대부, 매수, 주소변경, 소유권변경)	1건	4,000	
9) 권리변경(재개발지구)행위허가 신청	1건	4,700	

라. 보건사회 관계			
1) 의료기관 개설허가(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부속의료기관 포함)	1건	100,000	전국통일
2) 의료기관 개설신고(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안마시술소, 부속의료기관 포함)	1건	40,000	전국통일
3)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허가(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부속의료기관 포함)	1건	40,000	전국통일
4)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안마시술소, 부속의료기관 포함)	1건	20,000	전국통일
5) 치과기공소 인정 신청	1건	70,000	
6) 치과기공소 양수 신고	1건	70,000	
7) 안경업소 개설등록(양수신고 포함)	1건	70,000	
마. 문화공보 관계			
1) 공연장 등록	1건	52,000	
2) 공연장 변경등록	1건	42,000	
3) 종합유원시설업 허가	1건	220,000	
4) 종합유원시설업 변경허가	1건	170,000	
5) 일반유원시설업 허가	1건	170,000	
6) 일반유원시설업 변경허가	1건	87,000	
7) 기타유원시설업 신고	1건	81,000	
8) 기타유원시설업 변경신고	1건	60,000	
9) <u>게임제작업 등록</u>	1건	<u>32,000</u>	
10) <u>게임제작업 변경등록</u>	1건	<u>22,000</u>	
11) <u>게임배급업 등록</u>	1건	<u>32,000</u>	

<u>12) 게임배급업 변경등록</u>	1건	<u>22,000</u>
<u>13) 일반게임제공업 허가</u>	1건	<u>50,000</u>
14) 일반게임제공업 변경허가	1건	25,000
<u>15)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u>	1건	<u>50,000</u>
16) 청소년게임제공업 변경등록	1건	25,000
<u>17)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u>	1건	<u>50,000</u>
18)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변경등록	1건	25,000
<u>19)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u>	1건	<u>53,000</u>
<u>20)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변경등록</u>	1건	<u>32,000</u>
<u>21)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u>	1건	<u>32,000</u>
<u>22)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변경신고</u>	1건	<u>21,000</u>
<u>23) 영화상영관 등록</u>	1건	<u>45,000</u>
<u>24) 영화상영관 변경등록</u>	1건	<u>25,000</u>
<u>25) 비디오물제작업 신고</u>	1건	<u>32,000</u>
26) 비디오물제작업 변경신고	1건	25,000
<u>27) 비디오물배급업 신고</u>	1건	<u>32,000</u>
28) 비디오물배급업 변경신고	1건	25,000
<u>29)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등록</u>	1건	<u>45,000</u>
<u>30)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변경등록</u>	1건	<u>22,000</u>
<u>31)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신고</u>	1건	<u>32,000</u>
<u>32)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변경신고</u>	1건	<u>22,000</u>
<u>33)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 신고</u>	1건	<u>32,000</u>
<u>34)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 변경신고</u>	1건	<u>22,000</u>
<u>35)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u>	1건	<u>32,000</u>
<u>36)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변경신고</u>	1건	<u>22,000</u>

37) 노래연습장업 등록	1건	55,000	
38)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	1건	41,000	
바. 환경위생관계			
1) 세척제 제조업 신고	1건	20,000	
2) 세척제 제조업 변경신고	1건	15,000	
3) 기타위생용품제조업 신고	1건	20,000	
4) 기타위생용품제조업변경신고	1건	15,000	
사. 교통 관계			
1) 차고지설치 확인신청	1건	6,000	
2) 자가용화물자동차(신규·변경)신고	1대	1,400	
3) 자가용화물자동차 유상운송허가신청	1대	1,400	
4) 자가용화물자동차 임대허가신청	1대	1,400	
5) 임대자가용화물자동차 반환신고	1대	1,400	
아. 농림 관계			
1) 비료생산업 등록	1건	50,000	
2) 비료수입원 신고	1건	20,000	
자. 체육진흥 관계			
1) 체육시설업 신고	1건	30,000	전국통일
2) 체육시설업 변경신고	1건	10,000	전국통일

부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332호
의결 년월일	2008. 12. 22. (제148회)

제출년월일 : 2008. 11. 14.

제 출 자 : 부 천 시 장

□ 제안이유

-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 분법되어 개별 법률로 분리 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게임·음악·영화 및 비디오물 관련 수수료의 요율을 변경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게임·음악·영화 및 비디오물 분야 23개 종목의 수수료 요율을 변경함.(안 별표 1)

부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 중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10호 본문 중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 중”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의 목적이”로 한다.

제8조의 제목 “(규칙)”을 “(시행규칙)”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조례”를 “조례의”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별표 1]

제증명등의 수수료표(제3조 관련)

(단위: 원)

구 분	기 준	금 액	비 고
1. 증명			
가.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1) 각종 신고 및 등록필	1통	1,200	
2) 공장등록증명	1통	1,000	전국통일
3) 건축물관리대장 무등재 증명	1통	700	
4) 의료기관약국(휴·폐업) 사실증명	1통	3,000	
나. 도시계획 등에 관한 증명			
1) 환지(예정지 지정)증명	1필지	4,000	
2) 환지예정지에 대한 종전토지분할	1필지	1,500	
3) 체비지 분할신청	1필지	1,500	
4) 토지대금 완납증명	1건	1,200	
5)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1필지	800	전국통일
6) 부동산중개업			
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			
· 개 인	1건	20,000	전국통일
· 법 인	1건	30,000	전국통일
나) 중개사무소 등록증 재교부	1건	9,000	
다) 분사무소의 설치신고	1건	28,000	
다. 지방세에 관한 증명			
1) 지방세 납세증명서	1통	800	전국통일
2)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	1통	800	전국통일

라. 주택에 관한 증명			
1) 공(시)영 주택분양금 납부증명	1통	1,500	
2) 개별주택가격확인서	1호	800	전국통일
3) 공동주택가격확인서	1호	800	전국통일
마.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부여	1건	600	
바. 그 밖의 제증명			
1) 기타시설·공부 등에 의해 발급하는 증명	1통	800	
2.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			
가. 일반행정 관계			
1)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대부신청	1건	5,000	전국통일
2) 공유재산의 계속 사용수익허가·대부신청	1건	3,000	전국통일
3) 기타 각종 인·허가, 신고필증 등 재교부	1건	3,500	
나. 상공 및 동력자원 관계			
1)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신청	1 건	50,000	
2)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등록신청	1 건	14,000	
3)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 신고	1 건	35,000	
다. 건설 관계			
1) 사도개설허가 및 축조 변경허가신청	1건	58,000	
2) 하천 허가사항 변경신고	1건	16,000	
3) 공영주택의 양수, 양도 등 승인신청	1건	4,000	
4) 공(시)영주택(증·개축)승인신청	1건	4,500	
5) 도시계획사업 허가신청	1건	27,000	
6) 체비지 명의변경 신청	1건	4,000	
7) 토지사용(체비지) 승낙서	1건	4,000	
8) 체비지 확인서(대부, 매수, 주소변경, 소유권변경)	1건	4,000	
9) 권리변경(재개발지구)행위허가 신청	1건	4,700	

라. 보건사회 관계			
1) 의료기관 개설허가(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부속의료기관 포함)	1건	100,000	전국통일
2) 의료기관 개설신고(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안마시술소, 부속의료기관 포함)	1건	40,000	전국통일
3)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허가(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부속의료기관 포함)	1건	40,000	전국통일
4)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안마시술소, 부속의료기관 포함)	1건	20,000	전국통일
5) 치과기공소 인정 신청	1건	70,000	
6) 치과기공소 양수 신고	1건	70,000	
7) 안경업소 개설등록(양수신고 포함)	1건	70,000	
마. 문화공보 관계			
1) 공연장 등록	1건	52,000	
2) 공연장 변경등록	1건	42,000	
3) 종합유원시설업 허가	1건	220,000	
4) 종합유원시설업 변경허가	1건	170,000	
5) 일반유원시설업 허가	1건	170,000	
6) 일반유원시설업 변경허가	1건	87,000	
7) 기타유원시설업 신고	1건	81,000	
8) 기타유원시설업 변경신고	1건	60,000	
9) <u>게임제작업 등록</u>	1건	<u>32,000</u>	
10) <u>게임제작업 변경등록</u>	1건	<u>22,000</u>	
11) <u>게임배급업 등록</u>	1건	<u>32,000</u>	

<u>12) 게임배급업 변경등록</u>	1건	<u>22,000</u>
<u>13) 일반게임제공업 허가</u>	1건	<u>50,000</u>
14) 일반게임제공업 변경허가	1건	25,000
<u>15)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u>	1건	<u>50,000</u>
16) 청소년게임제공업 변경등록	1건	25,000
<u>17)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u>	1건	<u>50,000</u>
18)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변경등록	1건	25,000
<u>19)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u>	1건	<u>53,000</u>
<u>20)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변경등록</u>	1건	<u>32,000</u>
<u>21)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u>	1건	<u>32,000</u>
<u>22)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변경신고</u>	1건	<u>21,000</u>
<u>23) 영화상영관 등록</u>	1건	<u>45,000</u>
<u>24) 영화상영관 변경등록</u>	1건	<u>25,000</u>
<u>25) 비디오물제작업 신고</u>	1건	<u>32,000</u>
26) 비디오물제작업 변경신고	1건	25,000
<u>27) 비디오물배급업 신고</u>	1건	<u>32,000</u>
28) 비디오물배급업 변경신고	1건	25,000
<u>29)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등록</u>	1건	<u>45,000</u>
<u>30)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변경등록</u>	1건	<u>22,000</u>
<u>31)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신고</u>	1건	<u>32,000</u>
<u>32)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변경신고</u>	1건	<u>22,000</u>
<u>33)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 신고</u>	1건	<u>32,000</u>
<u>34)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 변경신고</u>	1건	<u>22,000</u>
<u>35)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u>	1건	<u>32,000</u>
<u>36)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변경신고</u>	1건	<u>22,000</u>

37) 노래연습장업 등록	1건	55,000	
38)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	1건	41,000	
바. 환경위생관계			
1) 세척제 제조업 신고	1건	20,000	
2) 세척제 제조업 변경신고	1건	15,000	
3) 기타위생용품제조업 신고	1건	20,000	
4) 기타위생용품제조업변경신고	1건	15,000	
사. 교통 관계			
1) 차고지설치 확인신청	1건	6,000	
2) 자가용화물자동차(신규·변경)신고	1대	1,400	
3) 자가용화물자동차 유상운송허가신청	1대	1,400	
4) 자가용화물자동차 임대허가신청	1대	1,400	
5) 임대자가용화물자동차 반환신고	1대	1,400	
아. 농림 관계			
1) 비료생산업 등록	1건	50,000	
2) 비료수입원 신고	1건	20,000	
자. 체육진흥 관계			
1) 체육시설업 신고	1건	30,000	전국통일
2) 체육시설업 변경신고	1건	10,000	전국통일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의3(정보공개수수료) 「<u>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u>」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보의 공개에 관한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p> <p>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생략)</p> <p>1.~9. (생략)</p> <p>10. 「<u>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u>」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비용감면을 신청하는 때에는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요금(공개되는 정보의 사본·복제물·인화물 또는 출력물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에 한한다)과 매체비용은 별도로 한다.</p> <p>가.~다. (생략)</p> <p>② (생략)</p> <p>제8조(<u>규칙</u>) 이 <u>조례</u>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3조의3(정보공개수수료) 「<u>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u>」 ----- ----- -----.</p> <p>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현행과 같음)</p> <p>1.~9. (현행과 같음)</p> <p>10. 「<u>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u>」 제17조제3항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의 목적이----- ----- ----- ----- ----- ----- -----.</p> <p>가.~다.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제8조(<u>시행규칙</u>) --<u>조례의</u>----- -----.</p>

<관계 법령발췌서>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게임제작업 등의 등록) ①게임제작업 또는 게임배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중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제26조(게임제공업 등의 허가) ①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의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할 수 있다.
(이하 생략)

②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이하생략)

③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반게임제공업의 허가를 받은 자와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등록을 한 자가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하거나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제41조(수수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게임제작업 또는 게임배급업을 등록하거나 변경등록을 하는 자
2.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허가, 변경허가를 받거나 등록,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이하 생략)

○ 음반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 ①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또는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중략)

②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제18조(노래연습장업의 등록) ①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제21조(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 ①제16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을 한 자가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제31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 또는 등록을 하는 자는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제16조제1항에 규정에 따른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또는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의 신고
2. 제16조제2항에 규정에 따른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의 신고
3. 제18조제1항에 규정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의 등록
4.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및 노래연습장업의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영화상영관의 등록) ①영화상영관을 설치·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그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이하 생략)

제57조(비디오물제작업 등의 신고) ①비디오물제작업 또는 비디오물배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제58조(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등록) ①비디오물시청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제61조(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 ①제57조 또는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또는 등록을 한 자가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제90조(수수료)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제36조제1항에 규정에 의한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자
2. 제57조제1항에 규정에 의하여 비디오물제작업 또는 비디오물배급업의 신고를 하는 자
3. 제58조제1항에 규정에 의하여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
4.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을 하는 자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비용부담) ①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공개되는 정보의 사본·출력물·복제물 또는 인쇄물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에 한한다)으로 구분하되, 수수료의 금액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수수료의 금액은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2.29>

②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는 때에는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을 제외한다)의 장은 업무부담을 고려하여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수수료의 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개정 2008.2.29>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2.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④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감면을 신청하는 때에는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공공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감면비율을 정하고,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정부기관에는 수입인지로, 지방자치단체에는 수입증지로,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공공기관에는 현금으로 각각 납부한다. 다만, 부득이한 때에는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⑦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